

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정관」 일부개정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욱



2025년 9월 8일

군포도시공사 정관 제 11 호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.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변경안 제8호 중 “제6호”를 “제7호”로 한다.

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개 발 사 업 부
입 안	직 위 성 명	개 발 사 업 부 장 최 민 기
	직 위 성 명	개 발 기 획 팀 장 정 영 도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박 진 영 (3 9 0 - 7 7 8 8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사업) ① (생 략) 1. ~ 6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(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)</p> <p>8.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</p> <p>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</p>	<p>제6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</u></p> <p>8. -----<u>제7호</u>----- ----- -----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